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승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89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이승미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조상호, 고병국, 추승우, 송아량,
김상훈, 김태호, 이병도, 오한아,
김화숙, 이은주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을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「교통안전법」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,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하여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자의 행정적,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교통안전점검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변경함(안 제10조)

나. 특별교통안전진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변경함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 제목“(교통안전점검)”을“(교통수단안전점검)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교통수단·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해”를 “교통수단에 대해”로 하고, “필요시 교통안전점검”을 “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교통안전점검”을 “교통수단안전점검”으로 하고, “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,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·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”를 “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교통수단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“(특별교통안전진단)”을“(교통시설안전진단)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36조”를 “제34조”로 하고, “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수단·교통시설·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”를 “교통시설설치·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①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·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·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10조(교통안전점검) ① 시장은 「교통안전법」 제33조에 따라 소관 <u>교통수단·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해</u>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<u>필요시 교통안전점검</u>을 실시할 수 있다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<u>교통안전점검 실시결과</u>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<u>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,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·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0조(교통수단안전점검) ①----- ----- <u>교통수단</u> <u>에 대해</u>----- ----- -----<u>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</u>----- ----- ②-----<u>교통수단안전점검</u> ----- ----- <u>수립·</u> <u>시행하여야 하며, 교통수단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1조(특별교통안전진단) ① 시장은 「교통안전법」 <u>제36조</u>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<u>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수단·교통시설·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<u>교통안전점검 결과</u> 당해 <u>교통수단·교통시설·교통체계</u>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<u>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1조(교통시설안전진단) ①----- -----<u>제34조</u>----- -----<u>교통</u> <u>시설설치·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①항에 따라 <u>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·관리자</u>는 <u>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·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</u>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